

1-2-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관계자 회의

□ 관련공약

- 공 약 명(1-2-7)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공약내용 :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대한 교통수단 보급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으로 이동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 소통실적

- 일 시 : 2017.9.4.(1차 회의), 2017.9.27.(중형버스 시승체험)
- 장 소 : 강원연구원 대회의실
- 참 석 : 18개 시·군 담당자 및 관계자(상담센터 및 업체)
- 내 용 : 강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중형저상버스 소개

□ 실적자료



관계자 회의



중형저상버스 시승체험

- 붙임 1. 시·군 회의 개최결과 보고 1부.
2. 특별교통수단 관외운행 확대 추진계획 1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관련 시군 회의 결과 보고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18개 시·군 담당자와의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7. 9. 4.(월) 14:00~16:00/강원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 : 시·군 담당자 등 23명(도 2,시군 17,업체 4)※강릉,영월,정선 미참석
- ※ 회의진행 : 박효기 ((주)진화기술공사 도로교통본부 도로부서장/실장)

□ 주요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8개 시·군이 제출해야 될 자료(교통수단, 편의시설 현황 등) 전달 및 작성시 주의사항 설명 ※ 시·군 증진계획 용역업체를 통해 자료 취합
- 2018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안)에 대해 전달 설명
- 특별교통수단 광역화를 위한 사전준비절차 논의
 - 이용요금, 이용대상자, 운행범위, 운전기사 인건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 강조(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원주시에서 '18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콜센터 통합의사 표명

□ 향후계획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등과 개별적 면담(9월 중순)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군 공문시달
 - 시·군 18년 본예산 작업에 필요(9월)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시군회의 개최(9월 말)

회의 사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한 시군 합동회의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한 시군 합동회의

회의 내용

1.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을 설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이 모호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이용에 제약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필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30]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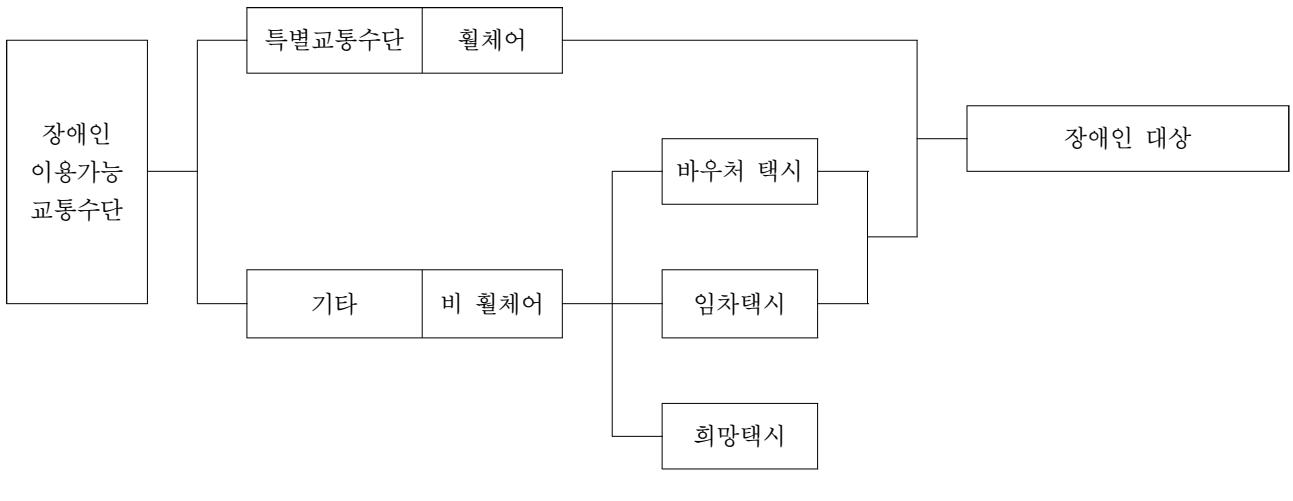
<표> 보건복지부 장애인 판정기준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	○	○	○	
		상지 관절					
		하지 관절	○	○	○	○	○
		상지 기능					
		하지 기능	○	○	○	○	○
		척추 장애		○	○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	○	○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				
	호흡기 장애	○	○				
	간 장애	○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간질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				
	정신 장애	○					

2. 특별교통수단의 관제 및 콜센타 통합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고, 현재 단독으로 운영하는 원주시의 경우 가능한 2018년에 통합화에 참여하기를 희망함.

3. 법으로 정해진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추가 교통수단확보에 대한 필요성 제기

<표> 장애인 이용가능 교통수단



- 주1)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일반인도 태울 수 있는 영업권을 보장받으면서, 장애인 승차 시 일반 택시요금 보다 저렴하게 받고, 차액은 지자체에서 보전을 받음
- 주2) 임차택시는 개인택시를 전일 임차해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택시 영업은 할 수 없으며 운행요금과 이용시간은 기존 교통약자 전용차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택시 외부에서 바로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 전용택시임
 임차택시 이용 대상은 광주광역시의 경우 1. 2급 장애인,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보호자 및 동반가족이 3명까지 동승할 수 있고 운행시간은 오전 7시-밤 8시까지 일 13시간씩 365일 연중무휴로 운행되고 있음
- 주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택시는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택시로 지자체로 보터 보조를 받음.

4. 2018년 확보가 예상되는 복권기금 약 40억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효율적 사용방안 설계사 검토 예정)

5.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인건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통일되기를 희망함.

6. 기타 사항(기초자료 포함)은 지자체별로 문서로 제출하시기로 함.

특별교통수단 관외운행 확대 추진계획(안)

I 추진배경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13.3.15.)하여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을 위한 여건 마련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은 2018년도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 배분이 예정된 사업임(기재부 복권기금위원회의 심의 완료)

II 그간 운영실태 및 추진결과

- 특별교통수단 도입
 - 대 상 : 18개 시·군(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도입 의무)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사업
 - 사업량 : 법정대수 도입 110대 (현재 99대 도입완료)
 - 사업비 : 4,400백만원(국·도·시군비 : 50·25·25) ※ 대당 4천만원

※ 특별교통수단 연도별 도입현황

(단위 : 대)

구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차량 도입	99	24	41	29	2	3	

- 광역이동지원센터(콜센터) 설치(2013.11월~)

- 상담원 12명(전일제 6명, 시간제 6명)
- 연중무휴 07~24시 운영 ※ 배차처리 : 366건/일

(단위 : 건)

구분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0월까지	비고
배차처리	303,578	10,442	74,311	107,778	111,047	

III 광역화 운영 개요

□ 사업현황('17년 기준)

-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 3대, 120백만원(국 60, 도 30, 시군 30)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도) : 1개소, 500백만원(도 500)
 -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군) : 18개 시군, 4,800백만원(시군 4,800)

□ 문제점

- 운영비 부담과 차량대수 부족으로 운영시간 및 이용지역 제한
 - 인건비 부담으로 군 단위 지역에서는 공휴일 휴무
 - 차량대수 부족으로 시군 관내로 제한된 서비스 제공으로 타 지역 이동시 이동 제한

□ 개선방안

- 복권기금을 확보,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확대(5억→40억)
 - 4,025백만원을 투입, '18년 특별교통수단 도내관외운행 본격시행
 - (계속) 광역이동지원센터 기능 강화 ※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 (신규)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 이용자부터 도내 광역이동 지원
 - (신규) 운영시간 일원화 지원 ※ 평일 07~22시, 휴일 09~18시
- 국비와 지방비 활용,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폭 확대
 - 840백만 원을 투입, '21년까지 120대 도입 계획
-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침 및 매뉴얼 마련
 - 이용요금 적정화, 운전기사 자격 및 인건비 등 시군별 격차 조정
 - ※ 도에서 표준안을 마련, 편차가 큰 시군부터 조례 조정 권고

➔ 재정확대를 통해 광역화 시행, 교통복지 道 실현

IV 세부 운영사항

□ 관외운행 세부 추진계획

○ 관외운행 구분

- 도내운행(휠체어 이용자) : 1단계 통합 추진(2018년)
- 도내운행(비휠체어 이용자) : 2단계 통합 추진(2019년)
- 도외운행 : 최종 통합 추진(2020년)

※ 1단계 추진 대상자는 1회 등록으로 도내 어디에서든지 차량이용 가능

○ 시군별 관외운행 전담차량 지정(1~2급 장애인수 기준)

- 3대 이상 : 장애인수 2,000명 이상 시군(춘천, 원주, 강릉)
- 2대 이상 : 장애인수 1,000명 이상 시군(동해, 속초, 삼척, 홍천)
- 1대 이상 : 장애인수 1,000명 미만 시군(그 외 시군)

○ 이용요금 : 기본요금(4km까지 1,100원), 추가요금(km 당 100원)

- 관외이동시 대기료는 1시간까지 무료, 초과 시 30분당 2,000원
- 주차료, 통행료 본인부담. 단, 기초수급자에 한해 통행료 면제
- 타지역 차량을 호출 시 왕복료 부담

※ 도내운행(휠체어이용자) → 도내운행(비휠체어이용자) → 도외운행의 순
으로 요금통일화 추진(관내운행과 일괄추진 권장)

단, 위원회 심의와 운영규정 개정과 맞물려 있어 시군별 개별시행 권고

□ 운영시간 일원화 세부 추진계획

○ 실수요가 적은 야간근로시간대를 피해 최소준수 운행시간 설정

- 최소준수 운행시간 : 평일 07~22시, 휴일 09~18시
- 야간근로시간대는 예약 당번제로 운영(시군 여건에 따라 개별 시행)

□ 광역이동지원센터(콜센터) 기능 강화('18년 시행)

○ 운영시간 연장 : 24시간 연중무휴

○ 별도 운영 중인 원주시 콜센터를 통합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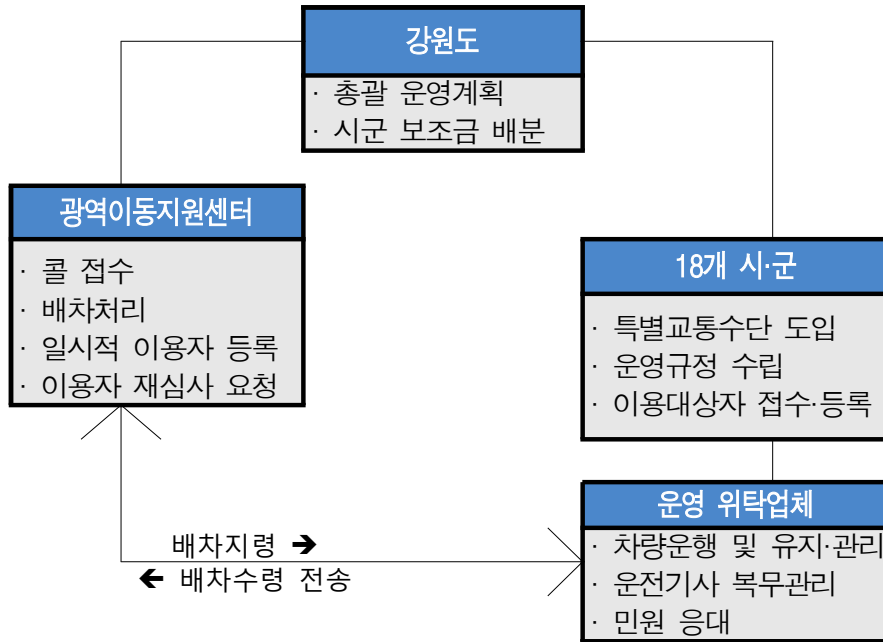
○ 이용대상자 재심의요청 및 이용대상자 일원화 관련 권고권한 부여

※ 시군에서는 홈페이지·Fax·직접방문을 통해 접수된 이용신청 심의·등록

V 운영체계 및 기관별 역할

□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및 기관별 역할

○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 기관별 역할

기관명	역할	비고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통수단 총괄 운영계획 수립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 · 시군 보조금 배분 	
광역이동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 접수 및 배차처리 · 특별교통수단 일시적 이용자 등록 및 이용등록자 재심사 요청 · 시스템(통신 및 전기 등) 문제 시 유지보수업체에 긴급지원요청 	
18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통수단(차량) 도입 · 시군 운영규정 수립 및 추진 · 운영위탁 계약 추진 및 관리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접수 및 등록 	
위탁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통수단 운행 · 지출 관리(유류비, 유지보수비, 인건비, 요금 등) · 기사 관리(운전기사 복무표 계획 및 조정) 	

VI 향후계획

- 특별교통수단 관외운행 운영지침 및 매뉴얼 마련('17.12월 중)
- 자체 운영 원주시 콜센터 통합 운영 개시('18.1.1.)
- 도내(휠체어이용자) 관외운행 본격 시행('18.1.1.)
-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18.1월 중)

※ 2018년 복권기금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조속한 조례개정 필요

- '18년 사업비 배분 : 4,025백만원(국비 4,025)('18.2월~)

VII 행정사항

□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예산배분 및 운영지침 수립

- 강원도 교통약자의 운영 매뉴얼 마련 시군 배포('17.12월)
-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18.1월)
 - (재정지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지원 내용 개정
- 시군 보조금 교부 및 도 직접사업 집행 : 4,025백만원(전액국비)
 - 기본운영비 교부 : 기본운영비 1,338백만원
 - 분기별 교부 : 실적에 따른 운영비 2,133백만원

(백만 원)

구 분	'18년 예산(국비-기금)		비고
	금액	산출내역	
합 계	4,025		
기본운영비 지원 (시·군 지원)	1,338	28대 × 47,786천원	1·2급 장애인 2,000명 이상 시군: 3대 1·2급 장애인 1,000명 이상 시군: 2대 그 외 시·군 1대 운영비 지원
관외운행거리 지원 (시·군 지원)	1,215	99대 × 12,272천원	운행실적에 따라 가변 가능 (1,800원/km 지원)
법정근로시간외 운행거리 지원 (시·군 지원)	918	99대 × 9,272천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도 직접)	554	상담원 16명 인건비	

□ (광역이동지원센터)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준비

- 상담원 충원 및 좌석배치, 근무조 편성('17.12월)
- 원주시 콜센터 통합에 따른 원주이용자 이용내역 이관('17.12월)
- 관제시스템 개선 완료에 따른 시스템 사용법 교육('18.1월)

□ (18개 시·군) 도 수립 특별교통수단 운영 총괄계획에 협조

- 도 수립 운영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시군 운영규정 변경
- 이용신청접수 및 이용대상자 등록(재심의 요청 시 협조)

□ (운영 위탁업체) 이용대상자 등록 및 차량운행 관리

- 관제시스템 이용을 위해 고정 IP가 부여된 컴퓨터 구매
- 차량과 운전기사 매핑 일정표 등록 및 변경요인에 따라 수시수정
- 운영관련 정산 및 수입금 관리